【 운영규정의 개요】

장기요양기관명	예가복지센터
장기요양기관 지정일자	2024년 12 월 26 일
홈페이지	https://blog.naver.com/yega1101
주 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락로 19. 2층
시설의 종류	재가노인복지시설 (방문요양.방문간호)

이용대상	● 치매·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·2·3·4·5 등급을 받은 자
계약규정	기간, 목적, 월 이용료,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(운영규정 참조)
수급자서류	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
	가. 장기요양인정서 나.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다. 급여제공계획서, 계약서 라. 처방전,검사지(필요시) 마. 방문간호지시서(방문간호서비스이용자) 바. 기초, 의료급여수급자(입소의뢰서) 사.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

수급자계약	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.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약해지	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본인부담금	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.

▢ 필요시 의료이용 절차

응급상황 발생 시	● 위급상황발생 시-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●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119 (구급상황관리센터), 129(보건복지콜센터), 1339 (응급의료정보센터)

▢ 노인인권보호

노인학대신고기관 1577-1389

노인인권보호지침에 따라 기관 운영을 하며
모든 종사자는 연 1회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함

▢ 직원인권보호

1.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, 직원 상호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2. 센터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3. 이용하는 모든 수급자와 보호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,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.

▢ 이용자 모집방법

- 온라인, 오프라인, 기타

▢ 운영규정

NO.	내용
1	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(온,오프라인을 통한 센터 및 급여종류 홍보)
2	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계약기간, 계약목적,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)
3	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4	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5	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6	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7	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(채용, 복무, 승진, 휴가)
8	보수에 관한 사항(임금, 퇴직금, 상여금)
9	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(복지, 포상, 휴가)
10	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(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, 건강검진)
11	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
12	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교육
13	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14	회계 및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
15	물품관리에 관한 사항